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3. 31 선고 2019가단538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선

피 고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송권일

변론 종결 2020. 3. 24.

판결 선고 2020. 3. 3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09. 4. 7. 접수 제11655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들에게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7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8. 10. 8. 접수 제372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서산지원 등기과 2009. 4. 7. 접수 제116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H는 그 자녀로 원고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소외 I(피고의 부친), J 등을 두고 2001. 12. 24.경 사망하였다.

나. J은 2017. 9. 9.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F과 자녀인 K, L이 있었는데 2019. 6. 2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J의 상속분을 원고 F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H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가 2001. 12. 24. 상속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09. 4. 7. 접수 제11655호로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I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I 사망 후 2018. 4. 10. 상속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8. 10. 8. 접수 제37231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판단

가.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나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거나 혹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배제된 상속인의 상속권(상속분)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므로 배제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민법 999조 등 참조).

나. 원고들의 주장은 H가 남긴 재산 중 서산시 M 전 357㎡와 N 전 9㎡에 관하여 만 I 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는데, I 이 이를 어기고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민법 제999조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이 사건 I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날인 2009. 4. 7.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9. 6. 26.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도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등기에 대한 말소는 앞의 이 사건 I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함에 따라 무효이고 무효인 위 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야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상속권 침해행위로서 이루어진 이 사건 I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가 제척기간 경과로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말소를 구할 실익도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I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고, 이 사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일부는 부적법하여 전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부 동 산 목 록

1. 충청남도 서산시 대 777㎡

2. 충청남도 서산시

위 지상

건물내역

목조아연판즙평가건주택

건평25평

부속건물

목조아연판즙평가건창고

건평16평